

『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기간, 입장료,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파크골프장의 목적, 정의, 명칭과 위치(안 제1조~제3조)
-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사용허가 제한 등,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-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관리운영의 위탁, 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의 금지, 감사, 위탁계약의 해지
(안 제12조~제16조)
- 개방제한 및 휴관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, 제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4. 8. ~ 4. 22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,
 - 관내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써,
 - 현재 관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총 7개소, 351홀이며, 일평균 이용객 760명 중 90%가 구미시민임. 또한 전체 이용객의 70%가 65세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파크골프는 구미시민의 여가활동 및 시니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며, 향후 시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의 체계적 운영과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